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5 선고 2018가단5011605(본소), 2018가단22570(반소) 판결
[구상금 ·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 A운영위원회

변론 종결 2018. 9. 3.

판결 선고 2018. 10.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083,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8.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26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65,000,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1,6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B의 C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하남시 D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B과 그 배우자인 E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E는 2016. 4. 29. 오전 1시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차타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용 승강기 1호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로 진입하던중 닫혀 있던 승강기 출입문을 충격하면서 승강기 통로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가 사망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던 B이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차량 및 이 사건 승강기가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31.부터 2016. 9. 13.까지 B 등에게 E, B에 대한 자동차상해보험금,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등 합계 108,334,16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승강기의 수리비는 21,6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1) 주차장법에 의하면,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 2) 이 사건 승강기에 설치된 감지기 재설치 과정에서 감지기가 차량을 감지할 수있는 거리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E는 감지기에 이 사건 차량이 감지되게 하기 위해 차량을 승강기 문에 가까이 이동시켜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밟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승강기에 설치되어 있는 경고등과 신호등도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다.
- 3) 이 사건 사고는 E의 부주의와 위와 같은 감지기 설치불량, 승강기 관리소홀 등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B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B등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60%)에 해당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E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승강기의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2, 40, 4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승강기 출입문 위쪽에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승강기 출입문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진입하면 승강기가 자동으로 작동하며, 승강기가 1층으로 올라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출입문이 열리게 되는 데,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책임자인 F은 2014. 9.경 승강기 출입구 위쪽에 있는 안내판교체 작업을 하면서 감지기를 재설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지기의 설치각도가 변경되어 감지기가 차량을 감지할 수 있는 거리가 벽체 기준으로 약 2.068m에서 약 1.744m로 변경된 점, 한편 이 사건 승강기 전방에는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감지기의 설치각도가 변경되어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앞바퀴가 위 방지턱의 상부로 올라가야 감지기에 인식되는 점, 차량의 앞바퀴를 방지턱의 상부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자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하고, 이후에는 승강기 출입문과 충돌하지 않기 위하여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점(반면, 이 사건 승강기 옆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2호의 경우, 감지기가 차량을 감지할 수 있는 거리는 벽체 기준으로 약 2.068m로, 위 지점은 방지턱 후방이므로, 방지턱 위로 올라가기 위해 가속페달을 조작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용 승강기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초래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관리자로서는 감지기의 감지거리, 방지턱의 위치 등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승강기는 자동차용 승강기로서 객관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E의 과실과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승강기의 위와 같은 하자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서 정한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주차장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 경위를 고려했을 때, 경고등, 신호등의 미설치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작동을 잘못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E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 E가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였고, 따라서 이 사건 승강기의 구체적인 사용방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호증의 45기재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턱을 약간 넘어가야 감지기에 감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E의 과실을 7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7,083,540원(= 108,334,160원 × 0.25)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E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승강기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강기의 하자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E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6,260,750원(= 21,681,000원 × 0.7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4. 2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다.

판사 심동영